|  |  |  |
| --- | --- | --- |
|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내수판매 보세화물 과세가격 심사결정 방법**  세관총서령 제211호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내수판매 보세화물 과세가격 심사결정 방법>은 2013년 12월 9일 세관총서 서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었다. 이에 이를 지금 공표하며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장  2013년 12월 25일  제1조 내수판매 보세화물의 과세가격을 정확하게 심사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 및 기타 유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세관이 내수판매 보세화물의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할 때 본 방법을 적용한다. 밀수혐의가 있는 내수판매 보세화물에 대한 과세가격 심사 확정에는 본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 내수판매 보세화물 과세가격은 세관이 해당 화물의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심사 확정한다.  제4조 진료가공 수입 자재 또는 그 완제품(불량품 포함)을 내수판매 하는 경우, 세관은 자재의 원래 수입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자재가 분할 수입되어 내수판매 되고 이에 자재의 수입과 내수판매를 일일이 해당 횟차에 대응시켜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은 동일 항목번호, 동일 품종 및 동일 세번의 원칙에 따라 계약 유효기간 내 또는 전자장부 핵소 주기 내에 기수입된 자재의 거래가격으로 소득을 계산하는 가중평균가액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계약 유효기간 내 또는 전자장부 핵소 주기 내에 기수입된 자재의 거래가격 가중평균가액을 계산 또는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세관은 객관적으로 수량화할 수 있는 당기의 수입자재 거래가격의 가중평균가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제5조 래료가공 수입자재 또는 그 완제품(불량품 포함)을 내수판매 하는 경우, 세관은 내수판매 신고를 접수 받는 시점 또는 대략적으로 같은 시기에 수입된 자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세화물의 수입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제6조 가공기업의 내수판매 하는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자투리 또는 부산물은 내수판매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부산물과 보세자재를 전부 사용하지 않은 생산 소득의 경우, 세관은 보세자재가 원가결산에 투입된 점유비중을 계산하여 그 결과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규정에 따라 잔액가치에 대해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 재해를 입은 보세화물의 경우, 세관은 내수판매 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규정에 의거, 자재로 환산하여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 경우, 세관은 각항 보세자재가 완제품(불량품 포함) 전체 자재에서 점유하는 가치비중을 계산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자투리, 부산물 및 규정에 따라 잔액가치에 대해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 재해를 입은 보세화물을 세관이 경매방식으로 내수판매 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세관은 경매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제7조 심가공결전 화물을 내수판매 하는 경우, 세관은 해당 심가공결전 화물의 결전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제8조 보세구역 내 기업이 내수판매 하는 보세가공 수입자재 또는 그 완제품의 경우, 세관은 내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보세구역 내 기업이 내수판매 하는 보세가공 완제품에 경내에서 구매한 자재가 포함된 경우, 세관은 완제품에 함유된 경외에서 구입한 자재의 기존 수입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보세구역 내 기업이 내수판매 하는 보세가공 수입자재 또는 완제품의 과세가격을 본 조 상기 2개 조항 규정에 의거하여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은 내수판매 신고를 접수한 시점 또는 대략적으로 같은 시기에 내수판매된 동일 또는 유사한 보세화물의 내수판매 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제9조 보세구역 이외의 세관 특수감독관리구역에 있는 기업이 내수판매 하는 보세가공 자재 또는 완제품의 경우, 내수판매 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보세구역 이외의 세관 특수관리감독구역에 있는 기업이 내수판매 하는 보세가공 자재 또는 완제품의 내수판매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은 내수판매 신고를 접수한 시점 또는 대략적으로 동일한 시기에 내수판매된 동일 또는 유사한 보세화물의 내수판매 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보세구역 이외의 세관 특수관리감독구역에 있는 기업이 내수판매 하는 보세가공 완제품, 동일 또는 유사한 보세화물의 내수판매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은 해당 화물의 생산 원가, 이윤 및 일반 비용으로 소득을 계산한 금액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제10조 세관 특수감독관리구역 내에 있는 기업이 내수판매 하는 보세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자투리, 폐품, 불량품 및 부산물은 내수판매 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세관 특수감독관리구역에 있는 기업이 세관의 허가를 받아 경매방식으로 내수판매 하는 자투리, 폐품, 불량품 및 부산물의 경우, 세관은 경매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제11조 세관 특수감독관리구역, 보세감독관리장소에 있는 기업이 내수판매 하는 보세물류화물의 경우, 세관은 해당 화물이 세관 특수감독관리구역, 보세감독관리장소에서 반출되는 시점의 내수판매 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해당 내수판매 가격에 포함되었으나 단독으로 열거하여 명시할 수 있는 세관 특수감독관리구역, 보세감독관리장소 내에서 발생한 보험료, 창고료, 운송 및 유관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제12조 세관 특수감독관리구역 내에 있는 기업이 내수판매 하는 연구개발 화물의 경우, 세관은 본 방법 제8조,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세관 특수감독관리구역 내에 있는 기업이 내수판매 하는 검사, 전시화물의 경우, 세관은 본 방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제13조 내수판매 하는 보세화물의 과세가격을 본 방법 제4조~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은 아래에서 열거하는 순서를 적용하여 해당 화물의 과세가격을 추정한다.  (1) 해당 화물과 동시 또는 대략적으로 동일 시기에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판매된 동일화물의 거래가격  (2) 해당 화물과 동시 또는 대략적으로 동일 시기에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판매된 유사화물의 거래가격  (3) 해당 화물의 수입 시점 또는 대략적으로 동일한 시기에 해당 수입화물, 동일 또는 유사화물이 제1급 판매단계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매입처에 판매된 최대 판매총량의 단위가격. 단, 다음 항목은 공제해야 한다.  a. 동급 또는 동일한 종류의 화물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제1급 판매단계에서 판매될 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이윤 및 일반비용, 통상적으로 지불되는 커미션  b. 수입화물이 경내 수입지점에 도착하여 하역된 이후의 운송 및 유관 비용, 보험료  c. 수입관세 및 국내 세금  (4) 아래에서 열거하는 각항 총합으로 계산한 가격. 해당화물의 생산에 사용된 자재 원가 및 가공비용,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동급 또는 동일한 종류의 화물판매 통상이윤 및 일반비용, 해당 화물이 경내 수입지점에 도착하여 하역하기 전까지의 운송 및 유관 비용과 보험료  (5)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금액  납세의무자는 세관에 유관 자료를 제출하여 전술한 제3항과 제4항의 순서를 바꿔 적용하도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4조 본 방법에 명시된 아래 용어의 정의:  내수판매 보세화물은 사정으로 인해 내수판매 되어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 가공무역 화물, 세관 특수감독관리 구역내의 화물, 보세감독관리장소 내의 화물 및 기타 원인으로 인해 내수판매를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 보세화물을 포함한다. 단, 이하 항목은 포함하지 않는다.  (1) 세관 특수감독관리구역, 보세감독관리장소 내의 생산성 기초시설 건설프로젝트에 필요한 기계, 설비 및 건설에 필요한 기초건설물자  (2) 세관 특수감독관리구역, 보세감독관리장소 내의 기업이 생산 또는 종합물류서비스를 전개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 설비, 금형 및 수리용 부품  (3) 세관 특수감독관리구역, 보세감독관리장소 내의 기업과 행정관리기구가 자가 사용하는 사무용품, 생활 소비용품 및 교통운송 도구  내수판매 가격은 국내기업이 보세화물을 판매할 때 매매쌍방이 체결한 가격을 의미하며, 국내기업이 보세화물을 구입하기 위해 매도측(보세기업)에게 실제로 지불하거나 응당 지불해야 하는 전체 대금이다. 단, 관세 및 수입단계에서 세관이 대리 징수하는 세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경매가격은 국가에 등록된 경매기구가 세관이 거래참여를 허가한 보세화물에 대하여 합법적이고 유효한 경매절차를 이행하고, 낙찰자가 경매규정에 따라 경매목적물을 획득한 가격이다.  결전가격은 심가공결전 기업간에 가공무역 화물을 매매하면서 쌍방이 체결한 가격을 의미하며, 심가공결전 전입기업이 가공무역 화물을 구매하기 위해 심가공결전 전출기업에게 실제로 지불하거나 응당 지불해야 하는 전체 대금이다.  제15조 납세의무자가 세관이 확정한 과세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응당 세관이 내린 유관 행정결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동시에 법에 의거하여 상1급 세관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6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밀수행위를 구성하거나 세관 감독관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세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의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7조 본 방법은 세관총서에 해석책임이 있다.  제18조 본 방법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中华人民共和国海关**  **审定内销保税货物完税价格**  **办法**  海关总署令第211号  《中华人民共和国海关审定内销保税货物完税价格办法》已于2013年12月9日经海关总署署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4年2月1日起施行。  　　　　　　　　　　　　　　　　　　　　　　　　　　　　　　 署 长　　　　　　　　　　　2013年12月25日    **第一条** 为了正确审查确定内销保税货物的完税价格，根据《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关税条例》及其他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海关审查确定内销保税货物完税价格，适用本办法。涉嫌走私的内销保税货物计税价格的核定，不适用本办法。  **第三条** 内销保税货物的完税价格，由海关以该货物的成交价格为基础审查确定。  **第四条** 进料加工进口料件或者其制成品（包括残次品）内销时，海关以料件原进口成交价格为基础审查确定完税价格。  　　属于料件分批进口，并且内销时不能确定料件原进口一一对应批次的，海关可按照同项号、同品名和同税号的原则，以其合同有效期内或电子账册核销周期内已进口料件的成交价格计算所得的加权平均价为基础审查确定完税价格。  　　合同有效期内或电子账册核销周期内已进口料件的成交价格加权平均价难以计算或者难以确定的，海关以客观可量化的当期进口料件成交价格的加权平均价为基础审查确定完税价格。  **第五条** 来料加工进口料件或者其制成品（包括残次品）内销时，海关以接受内销申报的同时或者大约同时进口的与料件相同或者类似的保税货物的进口成交价格为基础审查确定完税价格。  **第六条** 加工企业内销的加工过程中产生的边角料或者副产品，以其内销价格为基础审查确定完税价格。  　　副产品并非全部使用保税料件生产所得的，海关以保税料件在投入成本核算中所占比重计算结果为基础审查确定完税价格。  　　按照规定需要以残留价值征税的受灾保税货物，海关以其内销价格为基础审查确定完税价格。按照规定应折算成料件征税的，海关以各项保税料件占构成制成品（包括残次品）全部料件的价值比重计算结果为基础审查确定完税价格。  　　边角料、副产品和按照规定需要以残留价值征税的受灾保税货物经海关允许采用拍卖方式内销时，海关以其拍卖价格为基础审查确定完税价格。  **第七条** 深加工结转货物内销时，海关以该结转货物的结转价格为基础审查确定完税价格。  **第八条** 保税区内企业内销的保税加工进口料件或者其制成品，海关以其内销价格为基础审查确定完税价格。  　　保税区内企业内销的保税加工制成品中，如果含有从境内采购的料件，海关以制成品所含从境外购入料件的原进口成交价格为基础审查确定完税价格。  　　保税区内企业内销的保税加工进口料件或者其制成品的完税价格依据本条前两款规定不能确定的，海关以接受内销申报的同时或者大约同时内销的相同或者类似的保税货物的内销价格为基础审查确定完税价格。  **第九条** 除保税区以外的海关特殊监管区域内企业内销的保税加工料件或者其制成品，以其内销价格为基础审查确定完税价格。  　　除保税区以外的海关特殊监管区域内企业内销的保税加工料件或者其制成品的内销价格不能确定的，海关以接受内销申报的同时或者大约同时内销的相同或者类似的保税货物的内销价格为基础审查确定完税价格。  　　除保税区以外的海关特殊监管区域内企业内销的保税加工制成品、相同或者类似的保税货物的内销价格不能确定的，海关以生产该货物的成本、利润和一般费用计算所得的价格为基础审查确定完税价格。  **第十条** 海关特殊监管区域内企业内销的保税加工过程中产生的边角料、废品、残次品和副产品，以其内销价格为基础审查确定完税价格。  　　海关特殊监管区域内企业经海关允许采用拍卖方式内销的边角料、废品、残次品和副产品，海关以其拍卖价格为基础审查确定完税价格。  **第十一条** 海关特殊监管区域、保税监管场所内企业内销的保税物流货物，海关以该货物运出海关特殊监管区域、保税监管场所时的内销价格为基础审查确定完税价格；该内销价格包含的能够单独列明的海关特殊监管区域、保税监管场所内发生的保险费、仓储费和运输及其相关费用，不计入完税价格。  **第十二条** 海关特殊监管区域内企业内销的研发货物，海关依据本办法第八条、第九条、第十条的规定审查确定完税价格。海关特殊监管区域内企业内销的检测、展示货物，海关依据本办法第十一条的规定审查确定完税价格。  **第十三条** 内销保税货物的完税价格不能依据本办法第四至十二条规定确定的，海关依次以下列价格估定该货物的完税价格：  　　（一）与该货物同时或者大约同时向中华人民共和国境内销售的相同货物的成交价格；  　　（二）与该货物同时或者大约同时向中华人民共和国境内销售的类似货物的成交价格；  　　（三）与该货物进口的同时或者大约同时，将该进口货物、相同或者类似进口货物在第一级销售环节销售给无特殊关系买方最大销售总量的单位价格，但应当扣除以下项目：  　　1．同等级或者同种类货物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第一级销售环节销售时通常的利润和一般费用以及通常支付的佣金；  　　2．进口货物运抵境内输入地点起卸后的运输及其相关费用、保险费；  　　3．进口关税及国内税收。  　　（四）按照下列各项总和计算的价格：生产该货物所使用的料件成本和加工费用，向中华人民共和国境内销售同等级或者同种类货物通常的利润和一般费用，该货物运抵境内输入地点起卸前的运输及其相关费用、保险费；  　　（五）以合理方法估定的价格。  　　纳税义务人向海关提供有关资料后，可以提出申请，颠倒前款第三项和第四项的适用次序。  **第十四条** 本办法中下列用语的含义：  　　内销保税货物，包括因故转为内销需要征税的加工贸易货物、海关特殊监管区域内货物、保税监管场所内货物和因其他原因需要按照内销征税办理的保税货物，但不包括以下项目：  　　（一）海关特殊监管区域、保税监管场所内生产性的基础设施建设项目所需的机器、设备和建设所需的基建物资；  　　（二）海关特殊监管区域、保税监管场所内企业开展生产或综合物流服务所需的机器、设备、模具及其维修用零配件；  　　（三）海关特殊监管区域、保税监管场所内企业和行政管理机构自用的办公用品、生活消费用品和交通运输工具。  　　内销价格，是指向国内企业销售保税货物时买卖双方订立的价格，是国内企业为购买保税货物而向卖方（保税企业）实际支付或者应当支付的全部价款，但不包括关税和进口环节海关代征税。  　　拍卖价格，是指国家注册的拍卖机构对海关核准参与交易的保税货物履行合法有效的拍卖程序，竞买人依拍卖规定获得拍卖标的物的价格。  　　结转价格，是指深加工结转企业间买卖加工贸易货物时双方订立的价格，是深加工结转转入企业为购买加工贸易货物而向深加工结转转出企业实际支付或者应当支付的全部价款。  **第十五条** 纳税义务人对海关确定完税价格有异议的，应当按照海关作出的相关行政决定缴纳税款，并可以依法向上一级海关申请复议。对复议决定不服的，可以依法向人民法院提起行政诉讼。  **第十六条** 违反本办法规定，构成走私或者违反海关监管规定行为的，由海关依照《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和《中华人民共和国海关行政处罚实施条例》的有关规定予以处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十七条** 本办法由海关总署负责解释。  **第十八条** 本办法自2014年2月1日起施行。 |